

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9년 1월 15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

●법률 제16271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제2항 중 “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”을 “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”를 “직종별·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,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근로자 현황, 남녀 근로자 임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17년 2월 발표한 ‘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’ 보고서(PwC)에 따르면,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.7퍼센트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.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.

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‘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’에 따르면,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.6퍼센트에서 2016년 26.4퍼센트로 소폭 줄었지만,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.6퍼센트에서 2016년 41.0퍼센트로 늘어,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.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.

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‘적극적 고용개선조치’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.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·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,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‘적극적 고용개선조치’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·직급뿐 아니라,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